

의안번호	제 321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9년 3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1
----------	-----

제출연월일 : 2009. 3. 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조정 배정[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 6526(2008. 12. 29)]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31명에서 152명이 감원된 2,879명으로 함(안 제2조)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없음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018명⇒2,866명(감 152명)

나.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안 부칙 제2조)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 변경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간 합의여부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를 "제33조"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교육청에"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로, "3,031명"을 "2,87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018명"을 "2,866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 ----- ----- ----- -----.</p>
<p>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31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3,018명</u>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 2,879명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2,866명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도교육청의 표

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9]

제19조 (정원의 규정) ①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9>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 2008.3.4.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1호)

제3조 (표준정원의 산정<개정 2004.1.30>)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1.30>

②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③영 제14조제2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4.1.30, 2008.3.4>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1.30, 2008.3.4>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신설 2004.1.30>

[별표 1] <개정 2004.1.30>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제3조제1항관련)

<p>1. 특별시·광역시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5.793702×학교수 증감분×0.6+0.1919011×학급수 증감분×0.4)×1.15+70.9×2국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57×4과 지역교육청 증감분+40.3×2과 지역교육청 증감분</p> <p>2. 도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5.022132×학교수 증감분×0.6+0.3594281×학급수 증감분×0.4)×1.15+61.6×2국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51.5×4과 지역교육청 증감분+31.6×2과 지역교육청 증감분</p>

비 고

1.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은 각각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text{현정원} + \{1.720094 \times (\text{학급수} \div \text{학교수}) \text{의 자연로그값}\} \times \text{학교수} + 168.1659 \times 2\text{국6과} \quad \text{지역교육청수} + 177.8311 \times 4\text{과} \quad \text{지역교육청수} + 105.4566 \times 2\text{과} \quad \text{지역교육청수} + 161.7123] \div 2$$

나. 도

$$[\text{현정원} + \{1.910288 \times (\text{학급수} \div \text{학교수}) \text{의 자연로그값}\} \times \text{학교수} + 123.1787 \times 2\text{국6과} \quad \text{지역교육청수} + 49.33297 \times (2\text{과} \quad \text{지역교육청수} + 4\text{과} \quad \text{지역교육청수}) + 225.1432] \div 2$$

2.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는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 증감분은 각각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에 대한 당해연도의 증감분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6526, 2008.12.29)

구 분	표준정원	보정정원	비 고
충청북도교육청	2,879	2,965	